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정관(안)

가. 정관 신설 경과

2022년 9월 25일	정기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 신설을 의결
2022년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신설 방향 및 계획 의결
2022년 11월 21일	1차 실무협의후 초안 도출
2023년 1월 22일	1차 초안(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2023년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1차 문안 수정
2023년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2차 문안 수정
2023년 4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3차 문안 수정 및 신설 정관(안)을 의결
2023년 4월 2일	임시 공동의회 개최 공고 및 정관(안) 공지 및 취지 설명
2023년 4월 23일	임시 공동의회 개최

나. 교회 연혁

- 1982년 Virginia Tech 대학원생 10여명의 성경공부 모임이 구성되었고, 당시 김창엽 원로 목사가 학생들을 돕다.
- 1983년 2월 6일 첫 예배를 드리며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가 설립되다. 창립 당시 초대 목사로 박인철 목사님이 사역하였으며, 1985년 12월에 이임하셨다.
- 1989년 1월 부터는 Virginia Tech 의 박사과정 학생이자 전도사였던 2대 이웅상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안수) 1990년 3월까지 사역하다.
- 1990년 4월부터,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며 신학공부의 길로 들어서 학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던 3대 정태우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안수) 1991년 6월까지 사역하다. 당시 대학부는 Virginia Tech 출신 김 준 전도사가 사역하다.
- 1991년 7월부터 4대 신경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안수) 1995년 2월까지 사역하다.
- 1995년 4월부터 5대 정현 목사가 2012년 4월까지 사역하다.
- 2012년 4월부터 6대 임동진 목사가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 2013년 5월에 공동의회의 결의로 미국 남침례 교단(SBC)에 가입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우리 교회는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라 하고 영어로는 Korean Baptist Church of Blacksburg 로 한다

제 2 조 목적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고백하며 실천한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꾼을 훈련시키는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학원, 직장과 공동체들을 봉사와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
우리 교회는 인류와 환경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

제 3 조 위치

우리 교회는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를 주소지로 한다.

제 4 조 소속

우리 교회는 1983 년에 창립되었으며, 특정 교파에 소속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 편의를 위해 교회단체에 소속할 수 있다.

제 5 조 교인의 자격 및 호칭

1. 교인의 자격

우리 교회 교인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 교회의 정기 예배를 비롯한 교회 활동에 참석하며 제 1 장 제 2 조 교회의 목적을 위해 헌신한다.

2. 교인의 호칭

가. 우리 교회는 호칭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인을 호칭하는데 적절한 표현은 시행 세칙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다. 다른 교회에서 장립 집사, 장로, 권사등으로 임직 받은 사람은 그 호칭대로 부른다.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 1 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6 개월 이상 지난 교인 중 18 세 이상이며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
2.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들 중 추천된 사람이 맡는다.
3.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직, 인사, 재정, 정관의 신설 및 개정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공동의회 의장은 정기공동의회 3 주 전까지 교회에 공동의회 안건을 알리고 설명 자료를 배포한다.
5. 공동의회는 구성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의결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정관에 관련한 의결은 투표자 3/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공동의회 의결은 사전투표 및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6. 공동의회의 모든 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투표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정기 공동의회
매 회계연도의 행사 및 결산 보고와 차기 회계연도의 행사 계획 및 예산 승인, 운영위원회 및 교인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8. 임시 공동의회
 - 가. 담임목사, 운영위원회, 또는 교인 10 명이상의 요구에 따라 최소 2 주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 나. 안건은 소집 공고시에 함께 공고되어야 하며, 공고되지 않은 안건은 추가 상정할 수 없다. 새로운 안건과 긴급 안건에 대한 재청이 있는 경우, 다음 공동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봉사부서의 장(대표) 및 순장(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 및 교역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봉사부서 및 순장으로 1 년 이상 섬긴 자들 중에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당연직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 세이다. 당연직 운영위원의 안식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 중 추천 받은 사람이 맡는다. 단, 의제가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인 경우 대상 담임목사 및 교역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공동의회 의결사항 외 모든 사항을 다루고, 회의록은 교회에 알린다.
5.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나누고, 운영위원회 의장 또는 구성원 3 명이상 발의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 정기 및 임시운영회의 시기와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6.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운영위원들 중에 서기를 선임하여 기록을 총괄하도록 하고 임기는 1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서기와 회계

1. 교회의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2. 서기는 교회의 모든 사무와 기록을 총괄한다 필요시 부서기를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3. 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시 부회계를 비롯한 재정 사역 담당자는 회계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제 4 조 감사

1.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를 선임하여 교회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감사의 시작과 결과는 전교인에게 공지한다.
3. 감사의 집행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5 조 봉사부서

1. 담임목사는 필요한 봉사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부서장(대표)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담임 목사가 교회 앞에 임명한다.
3. 각 봉사부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 및 봉사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조 교회학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다운 교인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각급 교회학교를 둔다. 교인과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를 미래 교회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제 7 조 학원내 학생 공동체

학원내에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과 양육을 위하여 대학(원) 캠퍼스 학생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정기적인 집회와 자율적인 행사를 가지도록 지원하며, 신앙 지도를 위하여 간사를 세워 학원 복음화를 도모한다.

제 8 조 사무국과 부설조직

1. 우리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부와 부설조직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과 기타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재정과 관리

제 1 조 재정

1. 우리 교회는 제 1 장 제 2 조의 목적, 특히 학원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수립한다.
2.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8 월 31 일까지, 1 년으로 한다.
3.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회에 알린다.

제 2 조 지출과 결산 승인

1. 각 봉사부서장(대표)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차기연도 행사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회계는 매 회계연도 부서별 결산 및 차기연도 예산 계획을 포함한 전체 결산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승인하고 그 결과와 차기 년도 행사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4. 공동위원회의 결의로 확정된 당해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해 각 봉사부서장은 회계에 지출신청을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 각 봉사부서장은 계획한 행사와 예산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는 이 보고에 기초하여 결산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의결한다.
6. 재정의 수립, 지출과 결산, 교회에 공지하는 방법과 시기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목회

제 1 조 담임목회

1. 우리교회는 제 1 장 제 2 조의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일구어 가는 것을 목표로 목회를 한다.
2. 담임목사의 궤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 4 장 제 2 조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제 2 조 청빙과 선임

1.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사 후보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2. 이해관계자인 담임목사와 교역자는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조 담임목사의 신임

1. 새로 청빙 받은 담임목사는 위임 후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를 통해 신임을 얻어야 한다.
2. 담임목사는 10년마다 재신임 절차를 가진다. 재신임에 따른 절차와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즉시 해임된다.

제 4 조 사례와 복지

1. 담임목사의 사례는 가계 및 목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담임목사는 안식월 또는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3. 담임목사의 사례, 목회활동비 산정과 복지 그리고 안식월 및 안식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담임목사 사임과 해임

1. 담임목사가 사임할 의사가 있는 경우, 사임 3 개월 전에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의회 구성원 10 명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각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의 직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에 해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임여부를 결의한다. 재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즉시 직을 면한다.

제 6 조 교역자 선임과 해임

1.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단, 전임 교역자를 임명할 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역자의 해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교회에 보고한다.
 - 가. 담임목사가 해임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한 경우
 - 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건의로 해임안 발의한 경우

제 5 장 권징

제 1 조 징계

1. 징계의 목적과 절차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마태복음 18 장 15 절~17 절의 원칙을 따라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출교의 경우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조 교인의 자격 정지와 회복

1. 등록 교인은 사망, 출교, 다른 교회로 이명, 1년 이상 주일 예배 불참의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2. 교인의 자격이 정지 된 자는 제 1 장 제 5 조 1 항에 따라 다시 교인 등록을 하므로 교인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출교를 통해 자격이 박탈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공동의회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상.

부칙

제 1 조

본 헌법과 규약은 2023년 4월 23일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공동의회에서 통과하고 제정되었으며, 이후 공동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공동의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조 연령계산

정관 본문의 각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

제 4 조 교회의 해산

우리 교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최소 6주 전에 해산에 대한 안건을 공고해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교회의 해산을 결의했을 시 모든 재산은 개인에 기증이나 양도 될 수 없고, 기독교 단체에 기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동의회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제 4 조는 수정할 수 없다.

제 5 조 경과규정

1. 2012년 2월 12일 선임된 임동진 담임목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2022년까지 공동의회를 통해 임명된 운영위원들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상.